

1. 개정이유

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판정대기 기간 중 발생하는 목재제품 보관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(안 별지 제11호서식)

– 별지 제11호서식 중 “처리기간 150일”을 “처리기간 90일”로 변경

3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와 합의 전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 중 “처리기간 150일”을 “처리기간 9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안전성평가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90일	
신청인	기관·단체명		대표자 성명		
	전화번호/Fax		전자우편		
	주소				
신청내용	대상물품	명칭		생산·수입 연월일	
		용도			
		특징			
		생산자·수입자 또는 판매자(연락처·주소)			
	신청이유(사람과 환경에 물리적·화학적 피해 발생 우려의 근거)				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임업진흥원의 장 귀하

첨부서류	평가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(규격, 건조 상태, 강도,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등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	수수료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액
------	--	--

